# 진안제일고 청림관 운영 규정

# 【제 1 장 총 칙】

제1조(명칭) 본 규정은 진안제일고등학교 청림관 운영규정이라 한다.(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.)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청림관 에서 다음 각 호의 실현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- 1. 열악한 학습 환경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 학생에게 학업편의 및 면학 공간 제공
- 2.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협업할 줄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 향상
- 3. 교육공동체(학생,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사회)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신뢰성 확보
- 4. 기숙사의 합리적 운영 및 구성원 인권 존중을 통해 민주적 운영 문화 정착
- 5. 명문고로 도약하는 자랑스러운 진안제일고등학교인 육성

제3조(운영비)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- 제4조(운영기간) 학칙에 규정된 기간에만 운영하되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- 제5조(적용 범위) 진안제일고등학교 생활관인 청림관에 입사하여 생활하는 기숙사 입사학생 (이하 "학생" 이라 한다.)에 한하여 적용한다.
- 제6조(시설 이용) 시설 이용은 학생과 관리자에 한하되, 사용 목적이 타당하고 학생 생활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이 아닌 자에게도 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.
- 제7조(기숙사 운영 연간계획 수립) 학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기숙사 학생 선발, 기숙사비 운영, 기숙사운영위원회 활동, 기숙사학생자치회 활동 계획 등이 포함된 기숙사 운영 연간계획을 수립 한다.

## 【제 2 장 조 직】

### 제1절 사감 운영

- **제8조(사감의 임명)** 학교장은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임자를 선정하여 청림관 사감부장 및 사감교사, 전문사감을 임명한다.
- 제9조(사감의 역할) 기숙사의 관리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학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.
  - 1. 학생 생활지도 및 예절지도(공통)
  - 2. 안전 및 보건 · 위생 지도 (공통)
  - 3. 외출·외박관리 및 외부인 출입통제(사감부장)
  - 4. 기숙사 내 시설물 안전관리(사감부장)
  - 5. 학생 벌점관리 및 입, 퇴사에 관한 업무(사감부장)
  - 6. 숙소배정 및 좌석배치(사감부장)
  - 7.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(학생, 학부모, 의료시설, 경찰서, 소방서, 학교관계자 등과의 비상 연락망 체제 구축 및 유지 등) (공통)
  - 8. 기타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(공통)

## 제10조(사감의 근무시간)

- 1. 사감부장 및 사감교사는 시간외 근무로 평일은 16:30부터 22:30까지 근무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18:00부터 22:30까지 근무한다.
- 2. 교사의 근무시간외에는 전문사감이 근무한다.

## 제2절 기숙사운영위원회 운영

제11조(기능) 기숙사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림관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

#### 제12조(구성 및 운영)

- 1. 위원회는 교직원위원, 학부모위원 등으로 구성한다.
- 2. 위원은 교감, 기숙형고교 담당자(청림관 사감부장), 사감교사, 학부모대표 5명으로 구성한다.
- 3.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학생자치회 대표자 참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#### 제13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

- 1.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2.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
3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 ·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기숙사 운영비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- 3. 입사 학생 선발 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

#### 제15조(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)

- 1. 소집: 위원장, 학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
- 2. 의결: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

제16조(간사) 위원회 간사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(회의 개최 안내, 안건 심의 정리 등)
- 2. 위원회 의결 사항 시행
- 3.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

## 제3절 기숙사학생자치회 운영

제17조(기능) 진안제일고등학교 청림관 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청림관 학생자치회(이하 "자치회"라 한다.)를 둔다.

제18조(회원의 자격) 회원은 본교 기숙사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.

제19조(자치회 구성 및 임무) 자치회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자치회 임원: 회장, 부회장, 각 학년 대표 (남,여) 등으로 구성한다
- 2. 임원의 임무
  - 가. 회장: 자치회 총괄,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는 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건 협의 및 건의
  - 나. 부회장: 자치회장 보좌, 회장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시 회장의 임무 대행
  - 다. 학년대표: 각 학년을 대표, 기숙사 내 질서유지를 위한 생활교육 임무
  - 라. 호실장: 각 호실을 대표, 실의 관리 및 건의사항, 연락사항 전달.

제20조(임원 선출 및 임기) 임원 선출 및 임기는 각 호와 같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.

- 1. 임원: 자치회에서 1학기 말에 선출
- 2. 회장, 부회장, 학년 대표에게는 학교장의 임명장 수여
- 3. 임기: 1년
- 4.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,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

- 제21조(심의사항) 자치회는 원활한 입사생활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심의한다. 단, 기숙사 운영 규정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은 재논의 한다.
  - 1. 자치회 회칙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 - 2.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
  - 3. 학생의 건의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

### 제22조(회의)

- 1.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,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2. 자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회의 개최 일정 등을 사감과 협의한다.
- 3. 자치회 결정사항은 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장에 보고한다.

## 제4절 학교장의 책무

#### 제23조(학교장의 역할)

- 1. 학생의 휴식권 및 수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
- 2. 기숙사에서 상시적인 성적 우수반을 편성 · 운영하는 등 수월성교육을 지향하거나 학업성적 차별에 따른 평등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
- 3. 학생이 공동·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자치회 심의를 거친 규범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기르도록 지도
- 4. 학생이 기숙사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, 보건위생을 위한 청소·청결지 도, 안전·재난 사고예방 사전교육, 시설점검 실시
- 5.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책정·집행

# 【제 3 장 입사 및 퇴사】

제24조(입사 정위) 입사 정원은 72명(여 32. 남40)이며 학년별 배정인원은 다음과 같다.

	1년	2년	3년	계
기초생활수급자	7	7	8	22
원거리 통학생	7	7	8	22
성적우수자	9	9	10	28
계	21-23	21-23	24-26	72

- 1. 기초생활수급자가 정원기준 미달시 모두 원거리 학생으로 배정한다
- 2. 학년별 입사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입사기준에 따라 다른 학년의 입사 희망자로 충원할 수 있다.(가급적 3학년 우선으로 한다.)

제25조(입사 자격) 청림관 입사는 입사를 희망하고 그 보호자가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학생에게 입사 자격이 있고 입사를 희망하는 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 다음 순서대로 입사자격을 정한다.

- 1. 학생선도규정에 의하여 사회 봉사활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- 2. 건강에 이상이 없고, 감염성 질병의 질환자 및 보균자가 아닌 자
- 3.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
- 4. 학교장 추천자 및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(5% 이내)
- 5. 원거리 통학생 우선 선발 지역 (도 외 지역〉전주,군산,익산〉진안군 외 지역〉진안읍내 지역을 제외한 면 단위)
  - \*진안군 면지역은 거리 측정으로 원거리부터 선발함.
  - \*기타 지역(읍내) 및 원거리 통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 동일조건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우선순위로 선발한다.
- 6. 성적우수자의 입사 순서는 석차 백분율을 기준으로 하여 학년별로 작성하되(2-3학년은 학년 계열별) 적용 성적은 다음 표에 의거한다.(단, 동일 석차백분율인 경우에는 입사 기준에따름)

학년	1학기	2학기
1학년	고입선발고사 석차백분율	1-1학기 석차백분율
2학년	1-2학기 석차백분율	2-1학기 석차백분율
3학년	2-2학기 석차백분율	3-1학기 석차백분율

\*기타 우선순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.

#### 제26조(학생 선발)

- 1. 사감부장은 매 학기 입사 희망원을 제출한 자의 서열부를 작성하여 선정한다.
- 2.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학년의 대기자에서 최대한 빨리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3학년 수시입학자가 퇴사하고 3학년에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1,2학년에서 1:1 비율로 충원한다(2학년 우선)

- 3. 입사 직전 학기에 교내외에서 흡연을 1회라도 하여 적발된 경우 입사 서열부 작성 시 남 여 각 전체 학년 후순위로 배정한다.(2014년부터 시행)
- 4. 입사자는 조식 및 석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27조(입사 제한 및 재입사)

- 1. 입사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가. 전염성 질환 및 보균 학생
  - 나. 다른 학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
  - 다. 평소 음주 또는 약물 오남용이 있는 학생
  - 라. 기타 위원회에서 입사 제한한 학생
- 2. 재입사: 퇴사 사유가 소멸된 학생이거나 위원회에서 재입사를 결정한 학생
  - 가. 제29조의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다음의 경우에 재입사 할 수 있다.
  - 나. 자진 퇴사자의 재입사는 재학 중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다. 강제 퇴사자가 다음 학기에 입사를 희망하면 대기자 서열에 포함시키되, 학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180일 이후에 입사를 허용할 수 있다.

제28조(입사 기간) 입사 기간은 학기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

#### 제29조(퇴사)

- 1.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자신 퇴사와 청림관 규정에 의한 강제 퇴사로 구분한다.
- 2. 자진 퇴사는 보호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른다.
- 3. 강제 퇴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교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.
  - 가. 청림관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벌점 40점 이상, 경고 3회 이상 받은 자
  - 나. 감염되는 질병의 질환자 및 보균자, 신체 허약자
  - 다. 학생선도규정에 의거 사회봉사활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
  - 라. 폭력 행사, 집단 및 특수 폭행, 음주, 흡연, 금품 절취 또는 갈취, 불량 동아리 및 활동, 도박(카드,화투, 기타), 유흥장 출입자.
  - 마. 학업을 게을리 하여 성적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.
  - 바. 청림관 생활이 불량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퇴사 결정을 받은 자.
  - 사. 기숙사비(1인 사용료 및 식비)를 3개월 이상 미납한 자

#### 4.퇴사절차

- 가. 보호자가 담임교사 및 사감부장과 상담 후 퇴사원을 사감부장에게 제출한다.
- 나. 퇴사자가 재입사 시 퇴사당시 벌점 50%를 가져간다

# 【제 4 장 기숙사 생활 수칙】

- 제30조(일반적 사항) 기숙사는 공동 생활 장소이므로 학생은 타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며, 질서를 유지하고,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고 벌점과 일과표는 별첨 내용으로 한다.
  - 1. 타인의 생활 존중 및 배려, 질서유지, 규정준수, 사감의 지도 존중
  - 2. 개인의 취미 활동이나 건강관리 활동은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
  - 3. 외부인의 출입, 폭력, 응급 환자, 기타 긴급 상황 등 발생 시 즉시 사감 등에게 통지
  - 4. 특정 질환, 특이 체질, 특정 약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학생 등은 반드시 사감에게 통지
  - 5. 폭력 행사, 음주, 흡연, 촛불 점등 행위, 약물 오남용 금지
  - 6. 기숙사 출입 및 생활 불편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감에게 알림
  - 7. 몸 청결유지, 개인 의류 관리 철저(악취 발생하지 않도록 함)
  - 8. 학교에서 제공한 전기용품 외 다리미, 전기장판, 등 용품 사용 시 학교 승인 필요
  - 9. 호실 공용물품 수시 확인, 훼손 상태 발견 시 즉시 사감에게 신고(인위적 훼손의 경우 호실 구성원이 공동 책임으로 변상)
  - 10. 창문 밖으로 휴지나 기타 이물질 투척 금지(방충망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방충망의 임의조작 금지)
  - 11.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 투척 금지, 변기가 막히면 압축 기구 이용하여 해결
  - 12. 등교 또는 퇴실 시 냉난방 기기 및 전등 소등
  - 13. 현금 등 귀중품 호실 내 보관 금지
  - 14. 기숙사 시설물 임의변경 및 보조물 설치 금지(부득이한 경우 학교 승인 필요)
  - 15. 성냥, 라이터, 초 등의 인화성 물질 또는 위험 물질 반입금지
  - 16. 화투, 카드, 바둑, 장기 등 행위 금지

#### 제31조(자율학습실 이용)

- 1. 지정석 이용, 열람대 깨끗이 사용 및 낙서 금지
- 2. 입실 및 퇴실 시간 준수
- 3. 입실 시 휴대전화 전원 끄기
- 4. 음식물 반입 금지

### 제32조(컴퓨터실 이용)

- 1. 게임, 만화 등 동영상 시청, 기타 학습과 관련 없는 용도 사용 금지
- 2.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 프로그램 사용 금지, 필요시 지도교사와 사전 상의 필요
- 3. 본인 자료는 반드시 별도 개인용 저장 장치 이용
- 4. 음식물 반입 금지
- 5. 설치된 프로그램 소중히 사용, 사용 중 문제 발생 시 사감에게 신고
- 6. 노트북의 인터넷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 강의

등은 가급적 사전에 다운 받아 사용

7. 저작권 침해나 개인 정보 노출 주의

#### 제33조(외박과 외출)

- 1. 외박: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함(특별한 경우 사감의 허가 후 실시)
- 2. 외박 희망 학생은 외박 신청서 제출,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
- 3. 외출 희망 학생은 외출신고서 제출
- 4. 외출자는 규정된 귀사시간 준수 (부득이한 사정으로 귀사 시간 지키기 어려운 때는 사감에게 사전 알림)
- 5. 외박 장소 변경 시 사감에게 알려야 함
- 6. 종교 행사, 학원 수강 등 정기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신청서 제출

#### 제34조(입사 시 준비물)

- 1. 침구류: 이불(1인용 침대 크기의 깔개와 덮개), 베개, 매트리스 커버
- 2. 의류: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
- 3. 세면도구(비누, 샴푸, 치약, 칫솔, 수건)와 기초 화장품, 개인용 컵 등
- 4. 학습 자료: 교과서, 참고서, 필요시 USB 등 개인용 저장 장치
- 5. 현금: 가급적 현금 소지 최소화, 개인이 원할 경우 사감실에 위탁
- 6. 개인용 실내화: 기숙사용과 학교용 별도 구입
- 7. 개인용 세탁물 바구니

#### 제35조(기타)

- 1. 기숙사 내 설치된 안내판 수시 확인으로 사감의 지시 사항 등 각종 안내 및 전달사항 숙지
- 2. 등 · 하교 시 용모 · 복장 단정
- 3. 입실 및 퇴실 시간 준수
- 4. 남학생과 여학생 간 기숙사 동 출입 금지
- 5. 입 · 퇴사 등 특별한 경우 이외 학부모의 호실 출입 금지
- 6. 아침 식사: 07시 30분 배식 종료
- 7. 학교 일과 중 기숙사 출입 금지,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감 동행 하에 출입 가능
- 8. 방과 후 교육 활동 시간 또는 야간 자율 학습 시간 중 발생한 환자는 담임교사(또는 해당 교과 교사) 승낙을 받은 후 사감에게 신고 후 입실
- 9.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또는 명시된 내용일지라도 필요한 경우 자치회 협의를 거쳐 결정 또는 개정 가능

# [제 5 장 재정 관리]

제36조(재정운영) 기숙사 재정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학생 개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본인 부담 원칙
- 2. 청림관 운영비는 월별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 (단 방학이 있는 월은 일 수별로 계산 하여 징수한다.), 지자체에서 기숙형 고교 저소득층 자녀 지원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자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한다.

제37조(기숙사비 징수)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기숙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.

- 1. 기숙사비는 매월 징수
- 2.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날로부터 일할 징수

제38조(기숙사비 집행) ① 편성된 예산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다.

② 집행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39조(기숙사비 반환) 퇴사자의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.

# 【제 6 장 입사학생 안전 관리】

- 제40조(점호) 점호는 학생들의 인원점검과 건강 여부 및 시설의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,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 - 1. 점호시간: 아침 7시, 야간 11시 10분
  - 2.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등의 아침 점호는 별도로 정함
  - 3. 야가 점호 이후 외출 금지
  - 4. 인원파악이나 건강상태가 미리 파악되면 미실시 가능
- 제41조(사고 예방)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는 학생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 - 1. 학생의 출입 관리를 위하여 운영일지에 외출 및 외박 학생명단 작성
  - 2. 외부인 기숙사 출입은 사전에 학교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
  - 3. 주변 수시 순찰
  - 4. 점호 시간 준수(부득이 약식 점호가 필요한 경우 호실 대표가 점호)
  - 5. 점호 외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들 방 출입금지
  - 6. 전열기구 사용 금지(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)
  - 7. 방화 기구 및 비상구 수시 확인
  - 8. 학생 간 폭력 발생을 미리 인지한 경우 반드시 학교장에게 보고
  - 9. 시설물 수시 점검
  - 10. 연락 체제 구축(학생들에게 안내 및 홍보 실시)
  - 11. 각 호실별 해충,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물질 유무 등 정기적 점검
  - 12.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
  - 13. 상비약 비치(약품관리 일지 작성)
  - 14. 주변 응급의료원, 경찰관서 및 소방서 연락체제 구축
  - 15. 사감은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기술 숙지
- 제42조(사고 조치)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는 입사학생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 - 1. 사고 발생 시 환자 유무 확인 및 환자 응급 처치 최우선
  - 2. 환자의 상태가 심한 경우 119에 도움 요청
  - 3. 사회적 통념상 경미한 사고를 제외한 사고는 발생 즉시 학교장과 해당 보호자에게 통보
  - 4. 거액 또는 고가의 물건 도난 사고 시 학교장 등 관계자에게 보고한 후 함께 조치 방법 결정
  - 5. 학생 간 폭력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, 사건 조사는 학교 폭력 담당교사가 속 해있는 전담기구에 의뢰

- 6. 가해자 또는 피해자 조치도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회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이 조치해야 함
- 7.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비: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청
- 제43조(환경위생관리) ① 기숙사 시설의 청결 및 소독 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한다.
  -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4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, 학교실 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다.
  - ③ 정수기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,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.
- **제44조(시설물 점검)**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시설물의 유지 및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.
- **제45조(재난안전관리)** 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내에 사고지휘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  - ② 재난 대응 관계기관 연락망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대비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한다.

## 【부 칙】

본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청림관 벌점규정

조항	내 용	벌점	조항	내 용	벌점
1	생활이 불량하여 운영위원회 퇴사 결정을 받은 자	퇴사	17	인원 점검 시 불참자	<b>-</b> 5
2	금품을 갈취 및 남의 물건을 훔친 자	퇴사	18	무단으로 타 호실 출입한 자	<del>-</del> 5
3	음주, 도박 행위	퇴사	19	청소를 하지 않는 자	<b>-</b> 5
4	청림관 내에서 흡연을 한 자	퇴사	20	시간을 지키지 않는 자 (기상, 등교, 취침, 점호, 자율학습등)	<b>-</b> 5
5	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	퇴사	21	실내에서 운동화 신는 자	<b>-</b> 5
6	청림관 내 인화물질 반입(성냥, 라이터. 부탄가스 등)	-10	22	개인 사물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자	<b>-</b> 5
7	전열기(전기매트, 버너, 곤로등) 반입	-10	23	자율학습 시간에 무단 이석 자	<b>-</b> 5
8	시설물 훼손 및 파손	-10	24	청림관 내 음식물 반입한 자 (통닭, 피자, 등)	<b>-</b> 5
9	지시사항 불 이행	-10	25	욕실에 개인사물 두고 간 자 (수건, 비누, 치약 샴푸, 옷 등)	<b>-</b> 5
10	무단 외박한 자	-10	26	취침 방해 및 타인 침대사용	<b>-</b> 5
11	인원 확인 후 무단 외출한 자	-10	27	컴퓨터 사용시간 외 사용자	-5
12	남의 학습행위 방해하는 자	-10	28	실내화를 신고 운동장이나 학교 밖에 갔다 온 후 기숙사에 들어갈 때	<b>-</b> 5
13	폭력행사 및 폭언, 언쟁	-10	29		<b>-</b> 5
14	다른 입사 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(고성방가, 소란 등)	-10	30	입사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입사를 않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	<b>-</b> 5
15	자율학습 중 휴대폰 사용한 자 (7일간 압수)	-10	31	청림관 내에서 남녀학생 지나친 풍기문란 행위-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	벌점 및 퇴사
16	컴퓨터 게임하는 자	-10	32	취침시간 핸드폰사용	<b>-</b> 5

- 1. 학기별 점수가 다음학기로 넘어갈 때는 전 벌점의 50%를 적용하고, 학년단위로 합산한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강제퇴사 한다
- 2. 방학 중 입사자가 벌점 20점 이상인 자는 강제퇴사

# 별첨-2

# 청림관 일과표

구분	시 간	일 정
아침	· 07:00	· 기 상
	· 07:00 ~ 07:10	· 인원점검, 체조
	· 07:10 ~ 07:40	· 아침식사 및 청소
	· 07:40 ~ 08:10	· 세면 및 등교
저녁	· 18:10 ~ 19:00	· 저녁 식사
	· 19:00 ~ 20:40	· 자율학습(1차)
		· 심야보충
	· 21:00 ~ 22:30	· 자율학습(2차)
	· 22:30 ~ 23:15	· 세면 및 자율학습
	· 23:15 ~ 01:30	· 취침 및 자율학습
	· 20:00 ~ 21:00	· 입사 후 대청소
입사 (휴일)	· 21:00 ~ 22:30	· 자율학습
	· 22:30 ~ 23:15	· 세면 및 자율학습
	· 23:15 ~ 01:30	· 취침 및 자율학습

# 진안제일고등학교장